

# 2024년 조세변경 및 세무조사동향

July, 2024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 대표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HP: [www.seouvietnam.com](http://www.seouvietnam.com)



# 목차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	3
최저임금인상	6
BEPS 2.0	7
2024년 조세변경과 Official Letter	13
기업의 life cycle 별 주요 해당세목	22
세무조사 이슈, 절차, 회계계정별 이슈	23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38

- 주요내용

2023년 12월 8일 한국과 베트남은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보험협정은 양국가간 사회보장관련 연금보험분야의 주요규정을 양체약국간 통합해 규율하는 조약입니다. 양국의 적용법령 및 대상자는 한국의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가입한 국민연금가입자와 베트남의 social insurance법에 의거해 가입한 SI보험가입자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자료를 통해 해당 사회보험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납부면제:

한국에서 사업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경우, 5+3년을 베트남에서 SI를 납부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이 한국에서 지역가입자를 유지하는 경우, 베트남내 SI 납부면제기간은 5년입니다.

- 가입기간합산:

한쪽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은 10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협정상대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결정할 수 있음. 각국의 최소가입기간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 협정전과 동일하게 합산없이 연금수급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양국에 연금가입경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기간을 합쳐서 고려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

- 베트남사회보험공단 공표내용

베트남사회보험공단은 2024년 3월 19일자로 Official letter No. 862/BHXXH-TST issued on 19 March 2024 를 공표하고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적용을 위해서 베트남내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 및 현채한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면제를 위한 안내를 제공함.

적용대상 외국인은 주재원과 현채한국인근로자로 함.

주재원이라 함은 한국의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가입한 국민연금가입자로서 한국소재 고용주의 파견에 의거해 베트남내의 사업장에 주재원으로 파견된 근로자임.

현채한국인근로자라 함은 베트남내 소재한 사업장에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근로자임.

- 베트남내 연금보험료(Social insurance)납부면제:

주재원으로서 한국에서 사업장 국민연금가입자를 유지하는 경우, 5+3년을 베트남에서 SI를 납부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이 사업장에 채용되지 않고 한국에서 지역가입자를 유지하는 경우, 베트남내 SI 납부면제기간은 5년입니다.

- 사회보험협정의 적용시 주의사항

사회보험협정의 적용을 베트남내 근무하는 근로자가 적용할 경우, 양국 과세당국은 근로자의 과세자료 접근성의 개선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국인이 SI를 베트남내 납부하지 않기 위해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한국내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사업장이 존재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근로자향 근로세 세무조사시 베트남내 국세청이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베트남내 회사에게 한국내 근로소득 수령액을 베트남내 근로세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과세방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베트남 사회보험료(SI) 면제받기 위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b>적용대상</b>	베트남파견 주재원 및 현채한국인근로자
<b>준비서류</b>	<b>근로자준비서류</b>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한국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을 통해 발행)
	Form TK1-TS (현채근로자만)
	<b>회사준비서류</b>
	Form TK3 -TS(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활용보고서 및 사회보험가입자의 명단
	근로자는 회사에 준비서류를 제출한다. 회사는 준비서류를 검토한 후 관할 사회보험공단에 준비서류를 제출한다.
<b>진행절차</b>	관할사회보험공단은 제출서류를 검증, 검토 후 사회보험면제를 위해 사회보험전상망에 관련 정보를 기재완료한다.
	<i>진행기간: 법정 준비서류를 수령 후 5영업일내</i>

# 최저임금인상

## • 최저임금변경인상

베트남 사회보훈부와 노동부는 No. 01/NQ-CP 초안을 통해 최저임금 평균 6%인상을 2024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안을 공표하였습니다.

<b>Region</b>	<b>Statutory minimum wages per month (Unit: VND/month)</b>	<b>Statutory minimum wages per hour (Unit: VND/hour)</b>
Region I	4,960,000	23,800
Region II	4,410,000	21,200
Region III	3,860,000	18,600
Region IV	3,450,000	16,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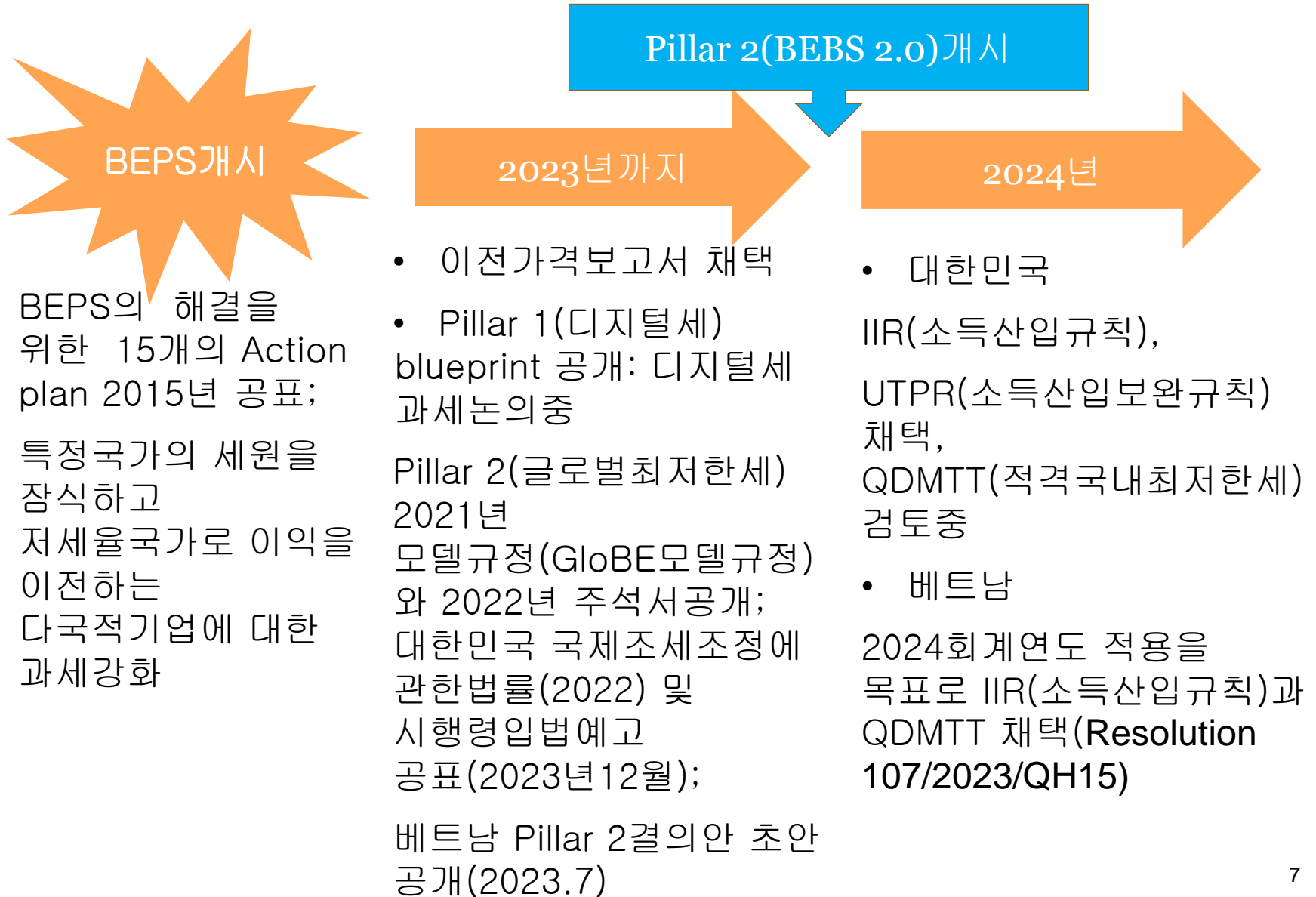
## • 최저임금변경 검토사항

- 회사가 입주한 region의 변경여부 확인
- 현 급여수준의 최저임금한도 준수여부
-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기여금 한도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임금의 변경

<b>From 01/01/2024 to 30/06/2024</b>	<b>From 01/07/2024</b>
기준임금은 VND 1,800,000/month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Resolution 69/2022/QH15)	기준임금은 VND 2,340,000/month

#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잠식

## •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Rule의 연혁



# BEPS 2.0(Pillar 2)

## IIR방식 글로벌최저한세:최상위지배회사가 소재한 관할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부과

대한민국 국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률(국조법§60등) 개정내용>

(개요)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글로벌최저한세=추가세율\*과세대상소득(순GloBE이익-실질기반제외소득(\*\*))+가산당기추가세액-적격국내최저한세추가세액(QDMTT)

➤ 추가세율=15%-실효세율(\*)

(\*)실효세율=조정후대상조세/순 GloBE이익

(\*\*)실질기반제외소득: 유형자산 연평균액의 5% 및 급여의 5%를 소득공제함.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KRW)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모회사**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후대상조세(\*)/순 GloBE이익(\*\*))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조정후대상조세: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

(\*\*)순GloBE이익: 자회사 관할국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시행시기) '2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BEPS 2.0

## 적격국내최저한세추가세액(QDMTT):구성자회사의 소재 관할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 Pillar 2 모델규정상

QDMTT=추가세율\*과세대상소득(순GloBE이익-실질기반제외소득)+가산당기추가세액(해당시)

➤ 추가세율=15%-실효세율

실효세율=조정후대상조세/순 GloBE이익

➤ 실질기반제외소득: 적격유형자산 연평균액의 5% 및 급여의 5%를 소득공제함.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자회사의 관할국에서** QDMTT 과세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후대상조세/순 GloBE이익)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구성자회사의 관할국에서** 추가과세

## 베트남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2023년 11월 29일자로 베트남 국회는 Resolution 107/2023/QH15 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를 통과시키고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함.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자회사의 관할국에서 QDMTT 구성자회사에게 과세

(적용제외 자회사) 베트남내 소재 베트남자회사들 전체의 3개년 GloBE평균매출이 1천만 EURO미만이고, 3개년 순Globe평균이익이 1백만 EURO미만인 경우 QDMTT는 비과세됨.

(신고및 납부의무 성립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내 신고 및 납부

• MoIT의 Pillar 2 적용에 의거한 회사 지원방안 검토

(i) 고정자산 및 사회인프루투자에 대한 지원

(ii) high-tech product에 제조비용지원

(iii) 직업훈련 및 인적자본개발비용지원

(iv) R&D비용 지원



세금절세나 자금지원은 GloBE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므로(실효세율감소) 그 지원효과는 감쇄됨.

## 적격국내최저한세추가세액(QDMTT):구성자회사의 관할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 Resolution 107/2023/QH15

QDMTT=추가세율\*Excess profit(순GloBE이익-  
실질기반제외소득)+가산당기추가세액(해당시)

➤ 추가세율=15%-실효세율

실효세율=베트남내 실재납부한 조세(\*)/순 GloBE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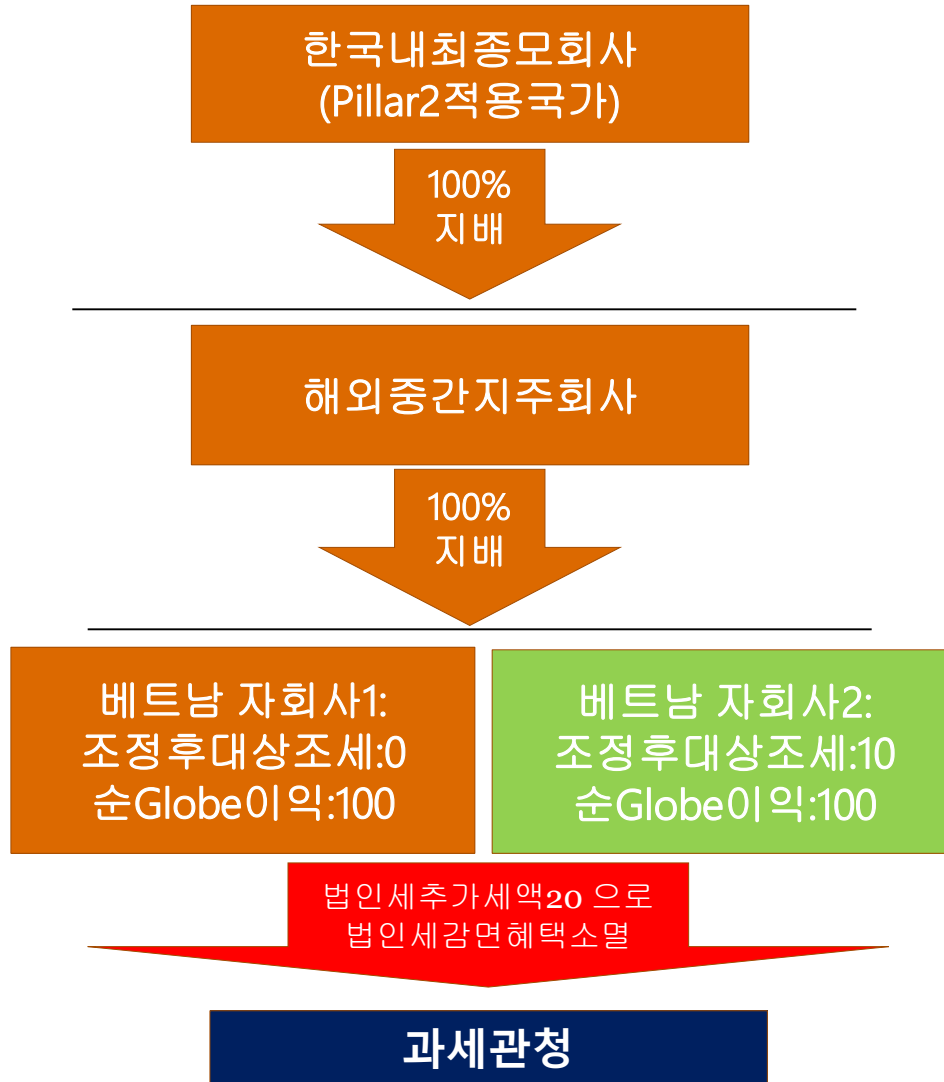
➤ 실질기반제외소득: 적격유형자산 연평균액의 7.8% 및 급여의 9.8%를  
소득공제한 후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최종 적격유형자산  
연평균액의 5% 및 급여의 5%를 소득공제함.

➤ 순GloBE이익(\*\*)=GloBE이익-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비용, 이월결손금의 처리방안 Pillar2에 근거한 베트남내  
추가입법 필요

(\*\*)순Globe이익 산출규정 Pillar2에 근거한 베트남내 추가입법 필요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 계산예시



- 베트남세법상 QDMTT적용시
  - 베트남전체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을 베트남 과세당국에 20납부
  - 한국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 납부액 없음
- 베트남세법상 QDMTT미적용시
  - 베트남전체 실효세율:  
 $(0+10)/(100+100)=5\%$
  - 베트남전체 글로벌최저한세추가세액: $(15\%-5\%)*(100+100)=20$
  - 한국내 최종모회사는 한국과세당국에 20납부
  - 베트남 QDMTT는 없음.

- **부가세율 8% 인하안의 연장 결의안 통과**

- 부가세율의 8% 인하를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결의한 Decree 72/2024/ND-CP 가 정부와 국회 심의를 통과함.
- 상이한 부가세율 적용의 이슈사항
- 부가세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는 인도시점, 용역은 제공된 시점임.
- 2024년 12월말전 인도완료한 재화 및 용역종결된 서비스는 8%적용가능함.
- 진행율에 근거해 제공하는 건설, 설치용역서비스는 2024년 12월말자로 공정진행율을 소명하고 기성고확인서를 확정하여야 8%적용가능성 발생함. 2024년 12월 이후 청구시엔 매출부가세 저율 적용은 부정됨.

- **부적격 내륙운송 수출입거래의 매입부가세 환급관련**

2024년 2월 20일자로 국세청은 재차 Official Letter No. 558/TCT-CS를 통해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 내륙운송을 통한 수출거래에 의해 inland Export CD를 발행한 베트남내 소재한 자회사인 재화판매자(수출매출자)는 대응하는 매입부가세를 환급신청할 수 없다.

## 2024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 무관세통관재화의 사용목적변경시 관세/부가세 사후추징

2024년 3월 12일자 Official Letter No. 1008/TCHQ-TXNK 에 의거해 관세총국은 유지보수, 하자보수같은 보관용 임시수입자산을 베트남국내 소비목적으로 사용목적 변경시엔 관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무관세 통관재화의 사용목적변경시 수입관세 사후추징으로 수입부가세 과세표준의 증액

2024년 4월 12일자 Official Letter No. 1570/TCHQ-TXNK 에 의거해 관세총국은 사용목적 변경으로 수입관세를 사후추징시엔 수입부가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므로 증가한 과세표준 금액에 수입부가세도 사후추징됨.

수입부가세의 과세표준=관세가격+수입관세/특별소비세/환경보호세이므로 수입관세가 사후추징되는 경우 수입부가세는 증액사후납부함.

- 지점폐쇄 후 미사용 매입부가세의 이관 후 공제가능

2024년 4월 15일자 국세청 Official Letter No. 1569/TCT-KK에 의하면, 지점폐쇄 후 미사용 매입부가세는 본점에 이전사용가능함. 지점의 폐쇄란 지점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코드의 폐쇄가 종결된 후에만 본점으로 이전사용 가능함.

# 2024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 수출용역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축소.

2024년 4월 17일자 Resolution 49/NQ-CP에 의하면, 정부는 영세율 적용 수출용역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법을 변경하는 의견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권고함. 재경부에서 해당법의 변경관련 의견수렴 및 영향을 검토하는 중임.

EPE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배제를 권고함.

영향: EPE의 매입부가세 자금부담 및 비용증가, 공급하는 자는 표준부가세율을 적용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무. EPE는 매입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비용만 가능(매입부가세 환급불가)

2024년 4사분기에 통과를 준비중임.

- 해외에서 강행법규에 의거해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근로세 계산 시 고려사항

2023년 12월 29일 자 국세청 Official letter No. 6002/TCT-DNNCN에 의하면, 외국인주재원이 베트남파견기간중 파견계약서에 근거해 해외본사와 베트남자회사에게서 동시에 급여를 수령하고 베트남자회사는 해외본사가 대지급한 급여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엔, 해외에서 납부한 강제사회보험료를 베트남 근로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추가질의를 접수 후 재검토 후 2024년 2월 27일자로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684/TCT-DNNCN를 공표하고 상기의 주재원의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강제사회보험료의 근로세 공제를 인정함. 금번 OL은 근로세 공제인정 조건으로서 해외본사가 대지급한 급여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 2024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

- 개업준비기간의 발생이자의 법인세 처리방안.

2024년 4월 Binh Phuoc 세무서의 Official Letter 1252/CTBPH-TTHT 에 의하면 개업준비기간의 이자비용의 비용처리 지침을 제공함.

회사가 공장신설투자를 수행하고 개업을 준비중에 예금이자 발생시에는 예금이자 차입금비용에서 차감공제되어야 함.

예금이자수익이 차입금이자비용보다 클 경우, 로컬 회계기준에 의거해서 차액은 건설중인자산의 감소로 처리. 반대의 경우엔 건설중인자산의 증가로 처리.

### ➤ 문제점:

VAS회계기준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구분해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달리 규정함. 이자수익이 이자비용보다 크더라도 투자대상적격자산의 가액을 감액할 수 없음.

# 2024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 지분양도세(CAPT) 변경초안

- 매각자가 해외소재한 외국법인이면 베트남 대상회사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매각가에서 지분양도세(이하 “CAPT”라 함)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유가증권의 양도시에는 매각가의 0.1%의 인정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됨.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의 지분(주식이 아님)을 양도시 발생한 소득은 20%의 법인세가 부과됨.
- 2024년 6월 재경부는 법인세법개정초안을 공표하고 매도가액의 2%를 공표하고 의견수렴중임.



대상회사 매도자	매각대상회사가 LLC(유한책임회사)	비공개 JSC(주식회사)	공개 JSC(주식회사)	매각대상회사의 원천징수의무여부
외국인 개인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도가액의 0.1%	매도가액의 0.1%	원천징수의무자
내국인개인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도가액의 0.1%	매도가액의 0.1%	원천징수의무자
외국소재 회사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도가액의 0.1%	원천징수의무자
내국인 회사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원천징수없음.

# 2024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 내륙운송통한 제품 수출입거래

- 내륙운송통한 제품 수출입거래(3자간 무역거래)의 수출입면장 불가

2022년 10월 17일자 관세총국은 Official Letter No. 4357/TCHQ-GSQL과 17/05/2023자 Official Letter No. 676/GSQL-GQ2 dated를 공표함. 내륙운송 수출입거래 중 베트남에 투자활동(자회사설립), 지점, Rep office같은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이하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라 함)가 중간거래자로 참여한 내륙운송 수출입면장발행을 불허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존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Point c, Clause 1, Article 35 of Decree No. 08/2015/ND-CP 에 의거한 inland Export/import CD를 발행받을 수 없으며 해당 CD거래의 폐지를 제안함. 아울러, 베트남내 재화공급자는 직접 베트남내 재화구입자에게 내국매출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MoF의 Decree No. 08/2015/ND-CP의 수정제안서

동 제안서에서 향후 관세총국의 Decree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1년간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판매자는 inland 수출입면장 연장사용가능.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판매자가 판매시 변경거래구조 제안안:

- 외국인판매자를 제외한 내국판매로 전환.
- 베트남내 재화판매자가 수출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부과된 수입관세 면세를 받기 위해선,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판매자는 보세창고를 통한 수출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베트남내 재화구매자는 EPE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 2024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 내륙운송 수출입거래의 수입관세환급

2023년 9월 15일자로 관세총국은 Official Letter No. 4795/TCHQ-TXNK를 공표함.

Point c, Clause 1, Article 35 of Decree No. 08/2015/ND-CP 는 inland export/import CD발행 가능거래가 아님.

적법한 point a and point b거래에 의거해 내륙운송을 통한 수출입거래를 통해 수입한 수입자는 수입재화가 수출용제조업에 사용되고 **제품이 해외(EPE, EP Zone포함)로 수출된 경우엔**, 수입시 납부한 수입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가** 계약당사자인 Inland Import CD의 수입관세 환급위험 조재.

- 과거에 재화의 수입시에 import Duty납부하였으나, 수입자가 제조활동 후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는 거래와 관련한 수입관세(예컨대, GDC OL 발행 전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향 inland Export CD를 통한 수출거래) 또는,
- Point c, Clause 1, Article 35 of Decree No. 08/2015/ND-CP 에 의거해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로부터 구입하고** Inland Import CD를 통해 납부한 수입관세는 환급청구할 수 없을 위험 존재. 추가 관세총국의 규정해석이 필요함.

- 내륙운송 수출입거래의 매입부가세 환급관련

2023년 9월 26일자로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4271/TCT-CS를 통해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향 내륙운송을 통한 수출거래에 의해 inland Export CD를 발행한 베트남내 소재한 자회사인 판매자는 대응하는 매입부가세를 환급신청할 수 없다.

# 2024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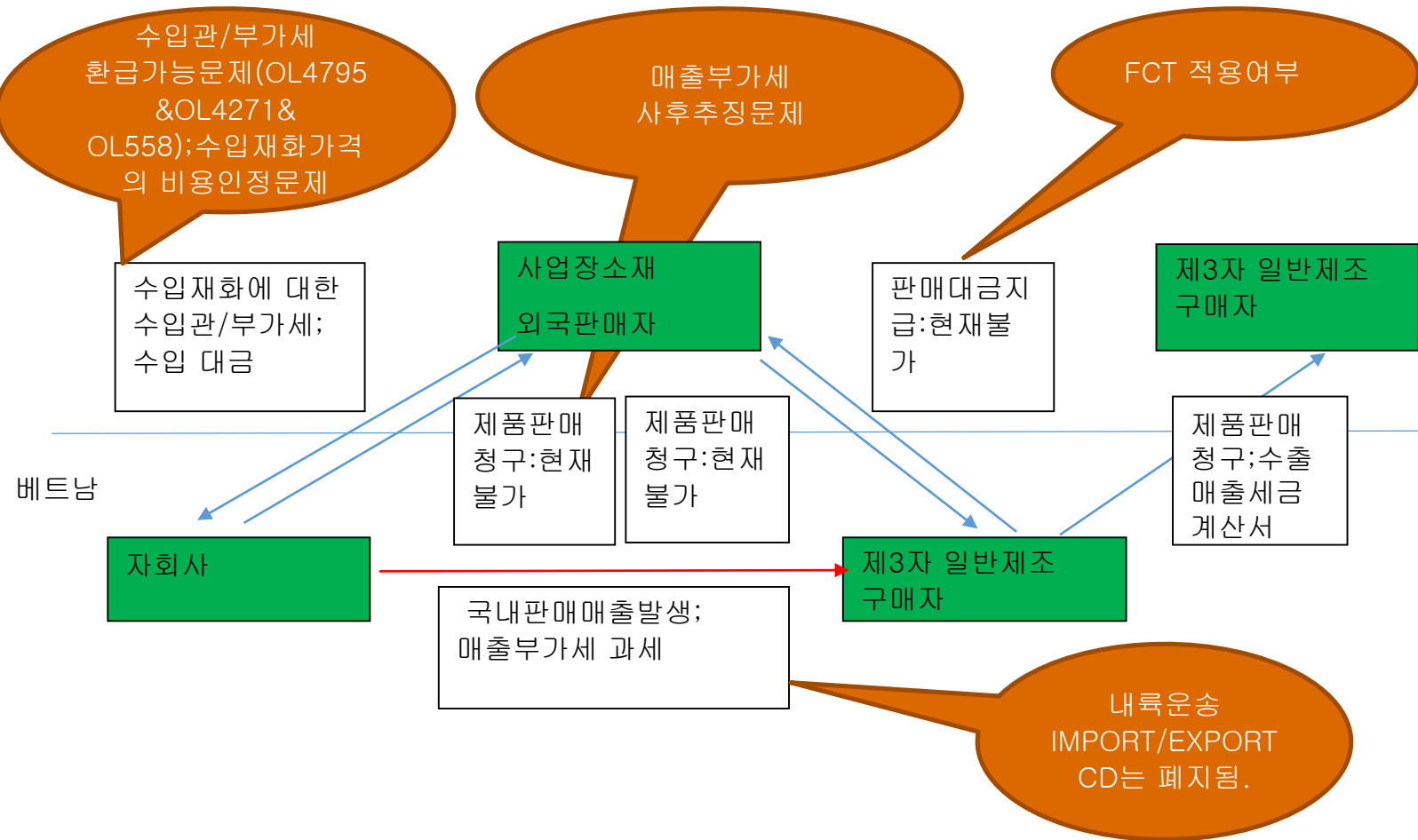
- 내륙운송통한 제품 수출입거래
  -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향 중계매출시 자회사의 세제영향

과세위험 세목	해당하는 GDC OL 공표 전 발행 Inland Export/import CD관련	해당하는 GDC OL 공표 후 베트남내 고객사에 판매시
수입관세 환급	비환급(OL No. 4795/TCHQ-TXNK)	비환급
매입부가세 환급/공제	비환급(OL No. 4271/TCT-CS and OL No. 558/TCT-CS); 매입부가세불공제/비환급	비환급
Output VAT	Inland export CD의 매출부가세 과소신고(추가확인 규정필요)	자회사가 매출부가세 납부
자회사가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로부터 내륙운송통해 수입한 재화의 구입원가의 비용처리	Inland Import CD의 부적격증빙사유로 비용불인정가능성 (추가확인 규정필요)	베트남내 고객사향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비용인식
FCT과세	과거 납부한 FCT환급가능성 (추가확인 규정필요)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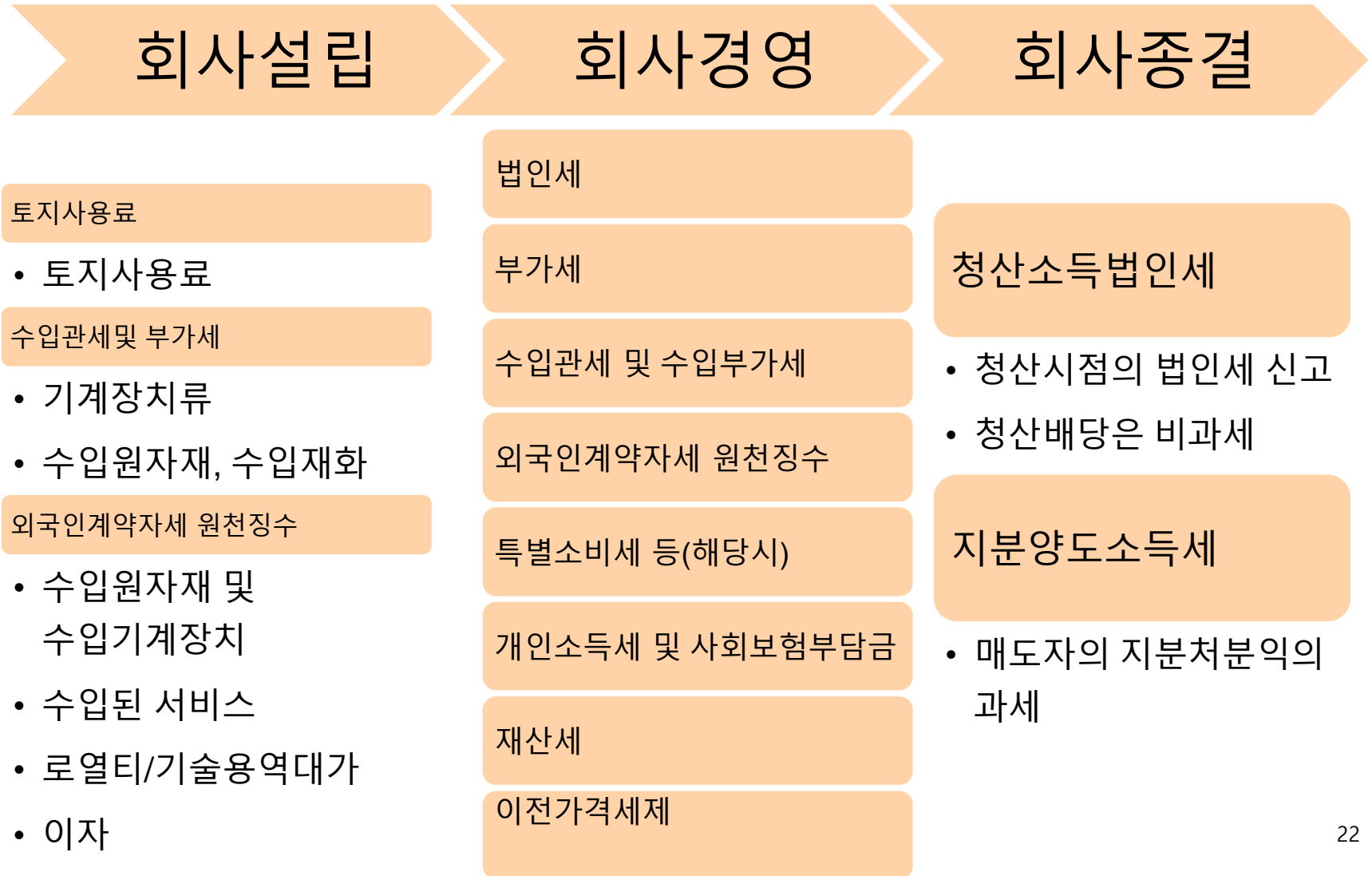
# - 2024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 내륙운송되는 수출입거래의 과세유형 예시

외국



# 기업의 life cycle 별 주요 해당세목



# 세무조사 이슈

## 주요 세무조사 영역

- 조세면제혜택 해당여부(예컨대, 조세면제 조건을 준수했나? 사업확장신규사업이 존재하나?)
- 업무관련성 검토(예컨대, 손금의 업무관련성, 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해 실제로 수령한 산출물과 회사의 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 적격하고 적법하지 않은 비용(노동법을 초과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한 수당에 대한 비용불인정, 노동허가증없는 급여의 비용불인정, 수입면장이 없는 수입원재료비용, 2천만동이상의 현금지급비용, 무등록자산으로부터 비용계상, 사업목적에 위배한 영업관련비용 등) ;
- 관련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문서를 비치하고 적격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수입재화 청산보고서와 일치하는 재고자산수불명세서, 적격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약서, 거래합의서 등)
- 개인소득세(예컨대, 본사 출장자의 개인소득세 과세, 한국내 수령소득에 대한 베트남내 합산신고, 노동법을 초과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한 수당에 대한 근로세 과세)
- 이전가격 과세제도(비교가능 동종회사의 업종 평균이익율 적정성)
- 외국인계약자세(과세권 면제여부, 적용세율, 조세조약 적용가능여부)
- 부가세(매입부가세환급사유 및 조건 검토, 수출과 국내매출 겸용시 매입부가세 안분근거, 휴면회사로부터 구입한 매입부가세)

## 회사의 대응방안

- 세무신고의 적법한 작성 및 적기납부
- 세법 규정의 변경시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세무진단을 수행
- 검토/세무진단 수행 후 회사의 관련규정 및 처리지침 변경실행
- 조세조약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 면제가능성 검토(예컨대, 지분양도소득세의 과세권 면제사례, 단순 수입재화 판매업자에 대한 FCT 비과세)
- 세무조사전 증빙서류의 사전준비 필수
- 조세불복절차의 가능성 검토
- 발생비용의 업무관련성 소명준비
- IRC의 회사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및 변경사항 발생여부 검토

# 세무조사 절차

공문명	발행자	내용	발행시기
세무조사계획통지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주안점, 세무조사 일정 및 세목을 포함한 세무조사계획안내	세무조사대상통지서 발행일 30영업일 이전에 세무서 내부세무조사기획 완료함. 사전 서류심사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세무조사대상통지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대상의 대상세목 및 담당세무공무원, 세무조사일정 고지	세무조사대상통지서 발행후 3영업일 이내 발송해야 함
세무조사개시 결정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조사개시일정, 조사기간, 대상세목 대표이사에게 고지	실시일 현장에서
세무조사 실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 대상통지서에 근거해 세무조사실행.	세무조사개시결정 후 10영업일(세무검사는 30영업일)내 현장조사기간가능
세무조사 연장통지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필요시 세무서의 연장결정 후 통지	세무감사는 1회에 한해 10영업일기간동안 연장. GDT경우 세무검사는 첫번째 45영업일내, 2회째는 30영업일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초안 전달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시 제공된 자료, 세무조사실행 발견사항통지 및 답변수령	세무조사시 발견사항, 납세자의 답변의견 기재 후 세무조사기간 후 5영업일내 제출 및 상호날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Tax audit minutes) 날인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 결과 발생한 세금추징세금 및 가산세	납세자의 답변의견, 설명기재 후 날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내부확정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 결과 발생한 세금, 가산세, 세무서내 보고확정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체결 후 3영업일내 내부보고 완료. 수정보완 내부발생시 납세자에 수정 결과통지서 재함의.
세무조사 부과액 결정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국세청 납부금액고지(추징세금 및 가산세), 납부기한 확정, 가산금은 자진신고 후 세무서 사후확정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납세자의 불인정의견 기재없으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체결 후 7영업일내 발행. 불인정의견 수령시 최장 2개월내 부과액결정서 발행.

-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의 정기세무조사
- 세무검사: 관할세무서/상위관청의 세무조사이슈 특정정밀감사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대차계정		
111	현금		
1111	VND		
1112	외환	외화환산손실 손금부인	
112	현금성자산		
1121	VND		
1122	외화표시 현금성자산		
113	타처보관현금등가물		
1131	vnd		
1132	외환	외화환산손실 손금부인	
121	단기매매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손익인정	
1211	주식		
1212	회사채		
1218	증권및 기타금융자산		
128	만기보유금융자산		
1281	정기예금		
1282	회사채		
1283	대여금	대손충당금조건 검토	
1288	기타만기보유금융자산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131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33	부가세선급금	공제/환급조건 충족여부	
1331	재화나 서비스구입관련 부가세선급금		
1332	고정자산 구입관련 부가세선급금		
136	본지점회계계정	회수불가자금의 근로세 부과위험	
1361	지점계정		
1368	기타지점계정		
138	기타유동자산	대손충당금조건 검토	
1381	미처분 자산감액충당금	손금인정조건 검토	
1385	민형화대가 수취채권		
1388	기타수취채권		
141	임직원에 대한 선급금	대손충당금 조건검토, 근로세 대상	
151	미착상품		
152	원재료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수입시 D-term거래여부
153	소모품, 저장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1531	소모품, 저장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1532	보관덮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1533	임대사업용 소모품, 저장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1534	소모성비품 및 예비부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154	재공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155	제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1551	제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1557	부동산제품	분양가능 개발업자의 취득원가/차입원가 조건 검토	
156	상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조건검토; 재고폐기손실조건; 수입시 수입면장	수입시 D-term거래여부
1561	상품구입		
1562	구입부대비용		
1567	부동산상품	Pink book취득여부, 일반법인 영리행위 금지	
157	타처 위탁상품		
158	보세창고보관상품		
161	국가보조금		
171	환매조건부매도채권		
211	유형자산	정액법, 법정내용년수, 9개월이상 유희자산 감가상각비 부인	수입시 D-term거래여부
2111	건물 및 구축물	수익적지출의 당기비용화; 차입원가 검토	
2112	설비 및 기계장치	수입면장, 수익적지출의 당기비용화	
2113	차량운반구, 운반설비		
2114	관리목적의 설비 및 도구		
2115	수목 및 생물자산		
2118	기타유형자산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212	금융리스자산		
2121	금융리스유형자산		
2122	금융리스무형자산		
213	무형자산	MoST등록조건검토, 업무관련성 소명, 특관자간 이전가격	로열티 or 서비스
2131	토지사용권		
2132	판권		로열티/서비스
2133	특허,저작권	MoST등록조건검토, 업무관련성 소명, 특관자간 이전가격	로열티
2134	상표권	MoST등록조건검토, 업무관련성 소명, 특관자간 이전가격	로열티
2135	소프트웨어개발자산	MoST등록조건검토, 업무관련성 소명, 특관자간 이전가격	로열티/서비스
2136	지적재산권 사용권한		로열티
2138	기타무형자산		로열티/서비스
214	고정자산감가상각누계액	고정자산감액손실평가 부인	
2141	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2142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143	무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147	투자부동산감모상각누계액		
217	투자부동산		
221	종속회사투자자산		
222	조인트벤처 및 관계사 투자자산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228	기타투자자산		
2281	기타 출자자산		
2288	기타투자자산		
229	자산평가충당금	평가충당금 설정조건 검토	
2291	매매가능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충당금		
2292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2293	대손충당금	채무자 고지의무	
2294	재고자산평가충당금	NRV소명의무	
241	건설중인자산	차입원가 자본화검토	
2411	고정자산구매중인 건설중인자산		
2412	자체건설중인고정자산		
2413	자본적지출관련 건설중인자산		
242	선급비용	3년내 정액상각; 토지사용권은 임차기간	
243	이연법인세차	실현가능성검토	
244	보증금	대손충당금 조건 충족검토	
331	매입채무		
333	제예수금		
3331	부가세예수금	영세율적용, 면세율적용, 감면부가세율 적용대상검토	
33311	국내판매부가세예수금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33312	수입부가세미지급금		
3332	특별소비세 미지급금		
3333	관세미지급금		
3334	미지급법인세		
3335	개인소득세예수금		
3336	미지급자원특별세		
3337	토지세, 건물등록세, 토지사용료 미지급금		
3338	환경보호세 미지급 및 기타제세		
33381	환경보호세 미지급		
33382	기타제세		
3339	미지급수수료, 기타미지급비용		
334	임직원미지급금	미지급임금은 실재 지급시 비용처리가능	
3341	임직원미지급금		
3348	기타임직원미지급금		
335	미지급비용		
336	본점계정		
3361	본점 자금수입		
3368	기타 본점계정		
337	건설공사 미지급금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338	기타부채		
3381	미확정 자산처분이익		
3382	노동조합미지급금		
3383	사회보장보험료 미지급금		
3384	건설보험미지급금		
3385	민형화대가 미지급금		
3386	실업보험 미지급금		
3387	선수수익	용역제공완료시점 검토(기성고확인여부)	
3388	기타부채		
341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채무면제이익;중앙은행 등록의무	이자소득
3411	차입금		
3412	금융리스부채		
343	회사채		이자소득
3431	회사채		
34311	회사채액면		
34312	사채발행차금		
34313	사채할증발행차금		
3432	전환사채		
344	수입보증금		
347	이연법인세대		
352	충당부채	손금불산입. 발생시 비용인정	
3521	보증충당금		
3522	건설보증충당금		
3523	구조조정충당금		
3524	기타충당부채		
353	급여 및 복지기금	조건충족시 급여기금 충당시 비용인정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356	R&D 기금		
3561	R&D 기금		
3562	고정자산취득 목적 R&D 기금		
357	가격안정기금		
411	납입자본금		
4111	법정자본금	창업비관련 선투자금 투자금인정조건 검토; 매입부가세환급조건검토	
41111	보통주자본금		
41112	우선주자본금		
4112	주식발행초과금		
4113	옵션선택권		
4118	기타자본금		
412	자산재평가차액		
414	Investment & development funds		
417	Business arrangements support fund		
418	Other funds		
419	자기주식		
421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 비과세
4211	전기말이익잉여금		
4212	당기손익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손익계정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511	매출		
5111	상품매출	인도기준(수출시 수출면장발행일)	
5112	제품매출	인도기준(수출시 수출면장발행일)	
5113	용역매출	용역제공시점(건설,설치는 기성고확인기준; 일반용역은 제공시점); 영세율적용검토	
5117	투자부동산매출	현금수령과 용역제공시점 중 빠른일자	
5118	기타매출	부산물매출, 이자수익의 법인세감면혜택	
515	금융수익	발생주의, 이자수익의 법인세감면혜택	
521	매출차감	매출차감합의서 필요.	
5211	매출할인(저가품)	매출차감합의서 필요.	
5212	매출에누리	매출차감합의서 필요.	
5213	매출환입	매출차감합의서 필요.	
611	매입		
6111	원재료 매입	인도기준(수입시 수입면장발행일)	
6112	상품매입	인도기준(수입시 수입면장발행일)	
621	직접재료비	인도기준(수입시 수입면장발행일)	수입시 D-term거래여부,설치용역 제공시
622	직접노무비	발생주의(실재지급조건과 노동법준수시)	
623	건설장비사용비용(건설업체에 해당)		
6231	건설장비노무비		
6232	건설장비사용 재료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6233	건설장비 비품		
6234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6237	외주용역비		
6238	기타비용 중 현금지불액	계좌이체조건 미충족사유	
627	제조간접비		
6271	간접노무비		
6272	간접재료비	인도기준(수입시 수입면장발행일)	
6273	집기비품비	인도기준(수입시 수입면장발행일)	
6274	고정자산감가상각비	실재사용자산의 내용년수준수;소유권증서	
6277	외주가공용역비	외주가공 인출서류 소명 필요(수입재화의 관세청 법규준수 조건)	
6278	기타비용 중 현금지불액	계좌이체조건 미충족사유	
631	제조원가		
632	제품매출원가	수입원재료 제품생산 불인정비용(세관조사결과)	
635	금융비용	EBITA 30%내 한도조건; 고율이자율 손금부인; 미납자본금해당 이자비용	이자소득VS 용역소득
641	판매비	DoIT등록의무	
6411	노무비	발생주의(실재지급조건과 노동법준수시)	
6412	원재료 및 보관료개비		
6413	집기비품비		
6414	고정자산감가상각비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이슈

회계코드	회계코드 국문계정	세무이슈	외국인계약자세
6415	판매보증비	실재발생시 비용인정	
6417	외주용역비		
6418	현금지불 기타판매비	계좌이체조건 미충족사유	
642	일반관리비		
6421	노무비	발생주의(실재지급조건과 노동법준수시)	
6422	집기비품비	선급비용으로 3년내 상각	
6423	문방구비		
6424	고정자산감가상각비	실재사용자산의 내용년수준수;소유권증서;폐기자산손금부인	
6425	제세공과금	손금불산입	
6426	충당부채비용	지급시 손금인정됨.	
6427	외주용역비	업무관련소명 증빙자료	용역소득VS로열티소득
6428	기타비용 중 현금지불액	계좌이체조건 미충족사유	
711	영업외수익	법인세감면혜택 부인(부동산매각익, 사업권양도익,미허가사업수익)	
811	영업외비용	업무무관비용 손금부인	
821	법인세비용	사업확장소득의 구분 및 법인세감면; 법인세 비감면소득의 구분 및 법인세감면대상소득여부	
8211	당기법인세		
8212	이연법인세차대의 증감		
911	집합손익계정		

# 조세불복절차



(\*)행정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는 행정부에 대한 불복절차와 무관하게 또는 중복되게 진행될 수 있음.

#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서우는 베트남 내 조세/회계자문, 재무컨설팅, 회계감사 및 HR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가적 실무경험을 축적한 한국회계사들과 베트남 회계사들이 5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입니다. 베트남 pwc베트남에서 장기근속한 조성룡 대표회계사 및 Deloitte 베트남에 근속한 최준회계사, pwc베트남에 근속한 김형준회계사를 중심으로 베트남투자 및 진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노이 본점(참빛빌딩 10층) 및 호치민지점(CJ 빌딩 3층)에 각각 위치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성룡 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대표, 한국/베트남 CPA)

Tel: 024-3776-7050

Mobile Phone: +84 98 548 7377

Email: [csrgs@seouvietnam.com](mailto:csrgs@seouvietnam.com)

주소: 참빛빌딩 10층, 117 Tran Duy Hung, Hanoi City

## 김형준 회계사

(호치민 지점장, 한국 CPA)

Tel: 028-3636-4671

Mobile Phone: +84 90 247 7335

Email: [kimhj@seouvietnam.com](mailto:kimhj@seouvietnam.com)

주소: CJ빌딩 3층, 6 Le Thanh Ton, HCM City

## 최준 회계사

(호치민지점파트너, 한국/베트남 CPA)

Tel: 028-3636-4671

Mobile Phone: +84 813 767 067

Email: [junchoi@seouvietnam.com](mailto:junchoi@seouvietnam.com)

주소: CJ빌딩 3층, 6 Le Thanh Ton, HCM City